대전시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2026~2030)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5. 2.

대전시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2026~2030)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 과업의 개요

- 1. 과 업 명: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26년~'30년)
- 2. 과업근거: 「습지보전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 3. 과업배경 및 목적
 - 가. 대전은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이 흐르며 대청호 일원에 습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습지의 체계적인 조사·관리** 및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해 보전대책 필요
 - 나. 대전 관내의 습지현황과 주변 환경, 습지 이용실태 등 자료 축적과 습지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관리방안 도출로 습지의 보전 ·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의 생태건강성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마련
 - 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23.6)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24~'28, 금강청)에 맞는 연차별 목표수립과 달성에 필요한 조치계획 수립 등 습지의 현명한 이용·관리 및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 라. 「습지보전법」제5조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수립 시행 중인 대전 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21~'25)의 기간 만료로 2026~2030(5개년) 까지의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으로 습지의 지속가능 하고 체계적인 보전 정책 추진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전역에 분포된 습지

나. 시간적 범위 : 2026~2030년(5개년)

다. 내용적 범위

-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 2)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21~'25) 성과 평가
- 3) 습지의 변화상 및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 4)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 5)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 제안
- 6) 갑천 습지보호지역 이용·관리 방안
- 7) 추동 습지보호지역 이용·관리 방안
- 8)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 9) 세부 실천계획 수립
- 10)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세부내용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가. 2026~203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대전광역시의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제시

2.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21~'25)의 성과 평가

가. 습지 보전 정책의 우수한 사례 발굴과 확대

나. 미비한 점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제시

3. 습지의 변화상 및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관내 습지현황 조사, 분석, 관리방안
 - 1) 습지소실 현황, 습지생태계의 위협요인 조사 및 개선 방안
 - 2) 자연습지를 대상으로 영상정보(드론촬영, 동영상, 사진 등)를 수집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DB화
- 나. 관내 습지별 주요 생물종 서식실태 분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희귀종 서식 현황 및 보전방안(대책) 제시 등

4.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 가. 습지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 습지보전 제도 분석, 대전광역시 습지보전방안 마련 등
- 나.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방향 : 복원 우선 순위 제시, 시급히 보전이 필요한 습지 현황 파악
- 다. 갑천 습지보호지역 현황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 라. 추동 습지보호지역 현황 조사 및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6~'30) 수립
- 마. 기타 습지보전 시책 발굴 및 관리대책 제시 등

5.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업계획

- 가. 갑천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 1) 갑천습지(우안) 데크길 설치방안, 설치규모, 방안*별 설치 주체, 소요 재원(조달방법), 타법 관련 사항 검토 등
 - * ① 습지보호지역 내, ② 습지인접 도솔산, ③ 월평공원, ①②③ 연계설치 등
 - **습지 조망**이 **가능**하고, **갑천 홍수위**를 **고려**하여 물흐름, 수위의 영향 으로 인한 파손, 소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나. 습지보호지역외 생태관광 및 교육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 습지를 생태체험사업 대상지로 지정, 시범사업 실시 방안 제시
- 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제시 등

6.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사항

- 가. 갑천수변 지역의 생태현황 및 특성 파악
- 나. 갑천습지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한 정보지 작성
- 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중장기 방안 제시
- 라. 기타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 제시 등

7. 습지교육 및 인식증진

- 가. 철새 탐조대 운영 등 환경 교육 및 생태관광 연계 사업 발굴·제시
- 나. 관내 습지의 대국민 홍보 방안과 습지교육 시책 개발
- 다.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습지교육 방안 구축 및 사업 확대
- 라. 교육기관별 활용 가능한 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시
- 마. 습지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방안 마련 등

8. 세부 실천계획 수립

- 가. 국가 습지보전 정책, 습지보전실천계획('21~'25년)과 향후 5년간 시행할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부실천계획수립
- 나. 세부 실천계획은 사업별 추진 기간, 추진방법, 참여 기관 등을 명확하게 제시
- 다.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제시

9.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발주처 요구사항)한 사항

■ 과업 수행지침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대전 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은 기존의 자료에 따라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그 결과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 다. 향후, 사업 및 관리계획을 단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21~'25)을 평가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라. 용역수행 과정 중 대전광역시 요청시 대전지역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마. 과업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2)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3)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1회 이상(보고회 개최)
 - 4)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보고회 개최)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가.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용역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추진계획, 일정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일정계획은 과업수행능력과 참여인원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수립
- 나.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범위, 실시 요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문구해석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 상위계획, 대전광역시의 중장기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기본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 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문헌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마.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1) 용역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수정
- 바. 과업수행자는 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발주처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이나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아.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사업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시에는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등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1)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과업착수 전 보안각서 제출
 -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카. 과업수행자는 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

3. 기타지침

가. 과업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주자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2) 위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와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3)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해약할 수 있다.
-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의 발생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의 조정

- 1)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 1)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습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 과업 수행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가 추천하는 습지 협의체, 지역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등을 반드시 연구단 또는 연구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본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인의 명단 및 이력사항, 과업이행 및 보안유지각서 등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 진행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피해에 상응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과 설득, 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일정

1. 과업의 시기 및 진행방법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최종보고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 라. 수시보고 : 과업 기간동안 대전시의 요청이 있을시 수급인은 조건 없이 응하여 진행사항 보고
- 마. 과업완성 : 수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최종 성과품을 대전광역 시장이 승인함으로써 과업 완성

2.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구 분		2025년							
	분 	M월	M+1월	M+2월	M+3월	M+4월	M+5월	M+6월	M+7월
착수보고, 용역개요 파악 및 방향설정									
자료수집 및 문헌조사									
습지현황조사 및 실천계획 초안 작성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제출

-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각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 소유로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 용역 성과는 최종보고회 자문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수정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완료된 용역보고서는 최종보고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최종보고서는 제출 시 전산자료(USB 등) 등과 같이 제출한다.

나.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ы ¬	
ТЕ	책 자	USB	비고
최종보고서(A4)	50부	10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요구 시